

|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 | |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 2 | 3 | 4 | 5 | 6 |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3.4.12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4.19**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15년 4월 2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 투자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8.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3.4.12)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펀드코드: B1205)

투자위험등급2등급 [높은 위험]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에 대해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CSI300 Index * 85%) + (Call * 15%)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중국본토 A주식에 투자
- 상해거래소 내 개장한 **커황반** 주식에도 일부 투자 가능
- 홍콩과 국내에 상장된 A주식 관련 ETF에도 일부 투자 가능
-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운용위탁계약에 의거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가 담당
-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함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클래스 종류 |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이내 | 1.66 | 0.70 | 1.73 | 1.784 | 280 | 470 | 670 | 1,100 | 2,376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 없음 | 2.36 | 1.40 | 1.89 | 2.485 | 255 | 489 | 701 | 1,133 | 2,416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1.31 | 0.35 | 1.28 | 1.434 | 196 | 350 | 511 | 858 | 1,890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없음 | 1.46 | 0.50 | 1.47 | 1.585 | 162 | 333 | 512 | 897 | 2,043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

| | | | | | | | | | | | | |
|--|--|------------|---------------------------|---------------------------|-------------------------------|---------------------------|--------------|----------------|--------|-------|--------|------------|
| | <p>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p> <p>(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 C1은 이연판매보수(CDSC)제도가 적용되어 최초매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종류 C4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에서 0.69%로 변경됩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p> <p>(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3년 | 최근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 | 2022/04/02~ 2023/04/01 | 2021/04/02~ 2023/04/01 | 2020/04/02~ 2023/04/01 | 2018/04/02~ 2023/04/01 | | | | | | |
| | 수수료징구- 오프라인(A) | 2015-04-02 | -11.44 | -13.77 | 2.24 | 1.12 | 1.59 | | | | | |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 | | |
| 운용전문 인력 | 수익률변동성 (%) | 2015-04-02 | 13.12 | 14.57 | 18.10 | 18.50 | 20.44 | | | | | |
| | (주1) 비교지수 : (CSI300 Index * 85%) + (Call * 1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 | | | | | | | | | |
|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 | | | | | | | | | |
|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_중국) | | | 운용 경력년 수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개) | 운용 규모 (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 | | |
| | | | 김다혜 | 1982 | 책임 (부장) | 44 | 26,717 | - | - | -6.02 | -13.27 | 12년 9개월 |
| | | | 염동훈 | 1984 | 부책임 (차장) | | | -6.02 | -13.27 | | | 6년 1개월 |
| <p>*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글로벌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글로벌운용본부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0개, 운용 규모는 0억입니다.</p>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 구분 |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주요 투자위험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 | 국가위험 |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주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인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 중 외화 가치의 $80\% \pm 20\%$ 수준에서 환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 달러선물(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의 환율 변동에는 노출됩니다. 환해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미국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거나, 해지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매입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
| 기준가 | 산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구분 | | 과세의 주요내용 | |
| 과세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 | |

| | | |
|---|---|--|
| | 통해 가입한 수익자 | 에서 제외됩니다. |
|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종류 C4수익증권으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에서 0.69%로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업자 |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1조좌 |
| 효력발생일 | 2023.4.19 |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
| | 판매경로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 | 보수체감(CDSC) 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

| | |
|----------------|--|
| 타 | 판매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입니다. |
|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입니다. |
| 무권유저비용(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 |
| 펀드, 전문투자자 등(F) | 집합투자기구, 법 제 9 조제 2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고액(I)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랩(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B1205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120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B120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B12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B120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B12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B121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B121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B121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B12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B121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B121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B121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B122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 B122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B330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BP55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BP55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BT30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BT30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개시(2015년 4월 2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B1205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120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B120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B12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B120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B12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B121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B121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B121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B12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B121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B121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B121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B122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 B122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B330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BP55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BP55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BT30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BT30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시행일 | 변경사항 |
|------------|---|
| 2015.04.02 | - 최초 설정 |
| 2015.04.08 | - 투자설명서 변경(모펀드 내의 다른 자펀드추가: 동부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 2015.05.15 |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 C-P2 신설) |
| 2015.05.29 |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 C-P2 환매수수료 삭제) |
| 2015.08.28 | - 집합투자규약 변경(모투자신탁 투자한도 변경) |
| 2015.11.18 | - 집합투자규약 변경(환매수수료 삭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
| 2016.02.25 | - 과세특례 해외펀드 활용을 위한 투자설명서 변경 |
| 2016.03.25 | - 집합투자규약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반영-유보가능 이익 조항 변경) |
| 2016.05.23 |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 2016.07.02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2등급) |
| 2017.04.29 | - 종류 A-G, 종류 C-G신설 |

| | |
|------------|--|
| | - 종류 C4 판매보수 변경(0.7%→0.69%) |
| 2017.05.22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 2017.07.28 | 종류 C-PE, C-P2E신설 |
| 2017.11.01 | <p>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자산운용 → DB자산운용 · 동부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www.dongbuam.co.kr → www.db-asset.co.kr |
| 2018.04.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변경(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수익률 변동성)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17.1.1 시행) |
| 2018.05.21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
| 2019.04.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 반영(모펀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 2019.05.21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
| 2019.08.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전략 및 위험문구 추가(상해거래소 내 커쾅반 개장) - 환헷지 전략 문구 수정 |
| 2019.09.11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정 및 투자설명서 변경 |
| 2019.09.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정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투자설명서 반영 |
| 2019.11.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 2019.11.29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김다혜 → 염동훈) |
| 2020.04.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반영)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 2020.06.12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
| 2020.08.19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 2020.0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2020.10.5 시행) |
| 2021.04.13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 2021.05.25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
| 2022.04.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22.04.29 | 운용역 변경(책임: 이동준→김다혜) |
| 2022.06.09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
| 2023.04.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2.20. 시행)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3.1.1. 시행/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1층(대표전화:02-787-3700) |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DB 자산운용(주)에 있습니다.

| | |
|------------|---|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Fullgoal Fund Management |
| 업무위탁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 |
| 설립일 | 1999.4.13 |
| 주소 및 연락처 | 16-17F, Phase II, Shangh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IFC), 8, Century Avenue, Pudong District Shanghai, China +86 21-2036-1818 |
| 관리자산 | 1.4조 원(2023년 1월 말 기준)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3.4.7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경력년수 | 이력 | |
|-----|------|-------------|---------|---|--|
| 김다혜 | 1982 | 책임 (부장) | 12년 9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현직)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
| 염동훈 | 1984 | 부책임 (차장) | 6년 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현직) -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주식형_중국) | |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 규모(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김다혜 | 1982 | 책임 (부장) | 44 | 26,717 | - | - | -6.02 | -13.27 |
| | | | | | -6.02 | -13.27 |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글로벌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글로벌운용본부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0개, 운용 규모는 0억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 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이동준 | 2015.4.2-2022.4.28 |
| 김다혜 | 2022.4.29-현재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김다혜 | 2015.4.2-2019.11.28 |
| 염동훈 | 2019.11.29-현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3.4.7)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경력년수 | 이력 |
|-----|------|-------------|---------|---|
| 김다혜 | 1982 | 책임 (부장) | 12년 9개월 | - D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현직)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 염동훈 | 1984 | 부책임 (차장) | 6년 1개월 | - D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현직) -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주식형_중국) | |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 규모(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김다혜 | 1982 | 책임 (부장) | 44 | 26,717 | - | - | -6.02 | -13.27 |
| 염동훈 | 1984 | 부책임 (차장) | | | -6.02 | -13.27 |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글로벌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글로벌운용본부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0개, 운용 규모는 0억 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 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이동준 | 2015.4.2~2022.4.28 |
| 김다혜 | 2022.4.29~현재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김다혜 | 2015.4.2~2019.11.28 |
| 염동훈 | 2019.11.29~현재 |

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2022년 9월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중인 자산규모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Li Xiaoming | 1970 | Head of Equity Mandate Investment Team | 347억 위안 (약 7.0조 원) | - Fullgoal 자산운용 대표펀드 Fullgoal Tianyi Fund (Morning Star 5 Star) 운용 -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서치 본부장 - NSSF (중국 국민연금) 전담 운용역 - 2007년 Fullgoal Fund Management 입사 |
| Bai Yang (白杨) | 1981 | Investment Manager | 14억 위안 (약 2,821억 원) | - NSSF (중국 국민연금) 부운용역 - Fullgoal Fund Management 트레이더 - Northern Securities 트레이더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운용입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와 펀드유형 및 수익률 분류체계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운용현황 및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 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Yu Jiangyong (于江勇) | 2013.10.28 ~ 2020.8.17 |
| Li Xiaoming | 2020.8.18 ~ 현재 |
| Bai Yang(白杨) | 2020.8.18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가입자격 | 선취판매 | 후취판매 | 투자신탁 보수(연, %) |
|----|------|------|------|---------------|
| | | | | |

| | | 수수료 | 수수료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사무관리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제한없음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0.90 | 0.70 | 0.05 | 0.01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인터넷가입 투자자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0.90 | 0.35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 제한없음 | - | - | 0.90 | 1.4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 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 | | 0.90 | 1.1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 C1 수익증권 2년 이상 보유 | | | 0.90 | 0.8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 C1 수익증권 3년 이상 보유 | | | 0.90 | 0.69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인터넷가입 투자자 | - | - | 0.90 | 0.5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 최초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투자자 | | | 0.90 | 0.1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C-F) | 집합투자기구, 제9 조 제24항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 계정 | | | 0.90 | 0.03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 보유자 | - | - | 0.90 | 0.00 | 0.05 | 0.01 |
| 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 P) |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 | - | - | 0.90 | 0.65 | 0.05 | 0.01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0.15%이 내 | 0.90 | 0.30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 P) |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 투자업자 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 - | 0.90 | 0.195 | 0.05 | 0.01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고액(S-I)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 - | 0.90 | 0.015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 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 - | - | 0.90 | 0.80 | 0.05 | 0.01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 납입금액의 0.7%이내 | | 0.90 | 0.49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G) | | - | - | 0.90 | 0.71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 인터넷 등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0.90 | 0.325 | 0.05 | 0.01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2E) | 인터넷 등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 | 0.90 | 0.40 | 0.05 | 0.01 |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
| | 수수료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입니다. |
| |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입니다. |
| | 무권유저비용(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 |
| | 펀드, 전문투자자 등(F) | 집합투자기구, 법 제 9 조제 2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 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
| 자투자신탁 | | |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UH) [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
| DB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 DB차이나본토 RQFII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 주요투자대상 | 외국주식 60% 이상. 단, 중국본토A주식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채권 및 어음 40% 미만 |
| | 투자목적 | 외국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을 Fullgoal Fund Management에 위탁 2. 성장가능성이 높은 저 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익 추구 |
| | 비교지수 | (CSI300 Index * 90%) (원화환산수익률) + (Call * 10%)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주식(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목적

외국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
|------|----------------|---|--|
| ①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70% 이상 | 신탁계약서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② | 파생상품 |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
| ③ | 유동성자산 | 10% 이하 (단,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 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환매조건부매수 |
| ④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③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 부터 1월간 |
| 거래 상대방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나. 모집합투자기구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
|------|-----------------|--|--|
| ① | 외국주식 | 60% 이상 단, 중국본토 A주식에의 투 자는 60%이 상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② | 채권 | 40% 미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③ | 어음 | 40% 미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
| ④ | 자산 유동화 증권 | 40% 미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⑤ | 집합투자 증권 등 | 40% 미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⑥ | 파생상품 |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

| | | |
|------|--|---------------------------------------|
| (7) | 환매조건부 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8) | 증권대여 (주1)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9) | 증권차입 (주2) |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
| (10)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11) |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

| | | |
|-----------------------|---|--------------|
| | <p>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 |
| 동일회사 발행 지분 증권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거래 상대방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집합투자 증권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 | |

| | | |
|--|--|--|
| | 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 신용등급 하락 시 집 합투자업자 의 조치사 항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중국본토 A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B 차이나본토 RQFI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환위험관리 :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 주식 등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해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80 \pm 20\%$ 수준을 목표로 환헤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 달러환산 순자산가치에 대해 환위험을 헤지할 예정이며(부분환헤지), 이러한 경우 미국 달러화 대비 대상 통화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부분환헤지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미국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거나, 헤지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
|-----------------|--|
| 환헤지의 장점 및 단점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 하여 펀드의 외화자산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 환헤지의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 |

| | |
|---------------------|---|
| | 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
|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 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 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 되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CSI300 Index * 85%) + (Call * 15%)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DB 자산운용 홈페이지(www.db-asset.co.kr)에서 확인가능)

- CSI300 Index는 중국의 전문지수산출기관인 중국증권지수공사(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발표하는 대표지수로서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의 상장 종목 중 대표적인 300여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CSI300지수는 중국증권지수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sindex.com.cn>)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구성종목,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 차이나본토 RQFII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본토 A 주식에 투자하여 향후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상해거래소 내에 개장한 커창반 주식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첨단기술 기업을 키우고 외국자본 의존도를 낮추고자 2019년 7월 22일 커창반(과학창업반)을 개장하였습니다. 커창반은 상해거래소에 신설된 기술·벤처기업 전용 증시로서,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 혁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중국본토 주요 시장 비교표]

| 구분 | 커惶반 (SSE Star Board) | 메인보드 (Main Board) | 중소판 (SME Board) | 차스닥 (Chinext Board) |
|------|--|-----------------------|-----------------------------|-----------------------------|
| 거래소 | 상해 | 상해/심천 | 심천 | 심천 |
| 시장유형 | 장내시장 | | | |
| 출범시기 | 2019년 | 상해 1990년/ 심천 1991년 | 2004년 | 2009년 |
| 주식유형 | A주 | A주, B주 | A주 | A주 |
| 상장기업 | 성장형 혁신기업 | 대형 우량기업 | 중형기업 | 성장형 혁신기업 |
| 투자자 | 본토 : 2년 이상 경 험 및 50만위안 이 상의 자산가, 외국인 (QFII/RQFII) | 본토, 외국인 (기관+개인) | 본토, 외국인 (QFII/RQFII, 기관) | 본토, 외국인 (QFII/RQFII, 기관) |

(3) 홍콩과 국내에 상장된 A 주식 관련 ETF 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DB 자산운용이고 이 투자신탁의 해외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운용위탁계약에 의거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 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개요
 - 회사명 :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
 - 설립일 : 1999년 4월 13일
 - 총 운용자산 : 1.4 조 위안(2023년 1월 말 기준)

(5) 성장가능성이 높은 저 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익 추구

- Bottom-up(상향식) 리서치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저 평가된 종목 위주로 발굴 투자
-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 성장성과 가치평가를 통해 자산 및 업종배분
- 소수 우량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아닌 분산투자를 통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 시황에 따른 단기매매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장기투자 지향

(6) 투자프로세스



* 중국본토 A 주식 : 중국 상해증권거래소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중국 내국인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가(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다.

*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 중국본토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를 말하며 CRSC(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을 얻게 되면 SAFE(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한도(Quota)를 받게 되며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가(RQFII)는 이 투자한도(Quota)내에서 중국 주식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DB 자산운용은 2014년 12월 26일 CRSC로부터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 투자대상국 현황-중국

1. 수도 : 베이징
2. 통화 : 인민폐(RMB)
3. 주요 경제지표

| 국가 | 인구(백만명) | 기준 | GDP | | 주요산업 |
|----|----------|------|-------------------|-----------|-------------------|
| | | | 각국 통화(십억) | USD(십억) | |
| 중국 | 1,412.12 | 2021 | CNY 114,433.70 | 17,744.64 | 제조업, 가전산업, 화학산업 등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2년 10월 발표통계치 기준

(7) 환위험 관리전략 : 환율변동 위험 노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SI300 Index * 90%) (원화환산수익률) + (Call * 1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중국본토 A 주에 주로 투자하는 DB 차이나본토 RQFII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 |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해외투자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며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자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80 \pm 20\%$ 수준을 목표로 환해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 달러환산 순자산가치에 대해 환위험을 헤지할 예정이며(부분환해지), 이러한 경우 미국 달러화 대비 대상 통화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부분환해지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미국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거나, 헤지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 |
|---------------|--|
| 업무위탁 거래상대방 위험 | 펀드는 외화자산의 운용 및 관련 업무를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탁운용사의 업무 능력, 운용 현황, 운영 위험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
|---------------|--|

| | |
|----------------------------|--|
| | 의 운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주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인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관련 위험 |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지연 |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중국본토주식 매매차익 과세 위험 |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 를 통한 중국본토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과세당국의 이러한 결정 이후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설정일 현재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과세에 대비한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신탁의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 또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내 유보 및 적립금은 중국과세당국의 결정 및 해당 시점의 감독법규 준수와 수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투자자금 회수 연기 위험 |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 RQFII의 자격취소 또는 투자제한에 따른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

| | |
|---------------|---|
| |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변동성 및 상장폐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일부 커창반 주식의 투자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커창반은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존 증시보다 손쉽게 상장할 수 있는 상장 특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상장폐지기준 적용으로 투자 종목의 상장폐지에 따른 수익률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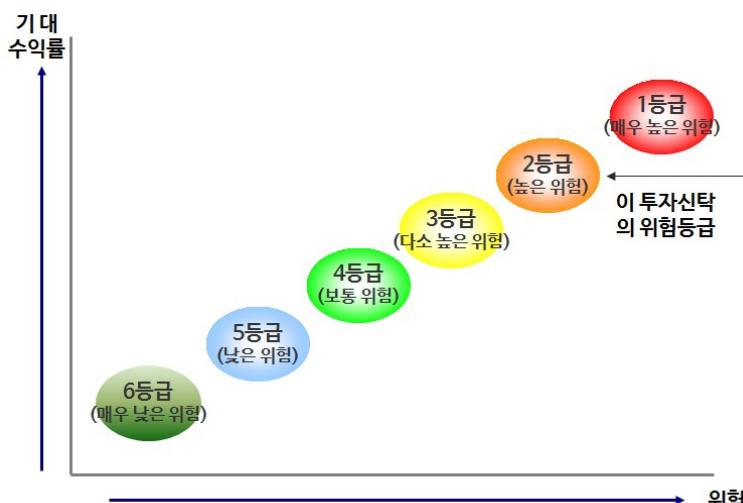
다. 기타위험

| | |
|--------------|---|
| 증권대차거래 위험 |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에 따른 위험 |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기타 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이상 투자합니다. 특히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위험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DB 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6 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23.4.1)기준 변동성은 **18.10%**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2등급(높은 위험)**입니다.

| 등급 | 상 세 설 명 |
|-----------------|--|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높은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다소높은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보통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낮은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매우낮은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CP(A3등급)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 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표준편차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4등급 (보통위험) | 5등급 (낮은위험) | 6등급 (매우 낮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25%이하 | 15%초과 25%이하 | 10%초과 15%이하 | 5%초과 10%이하 | 0.5%초과 5%이하 | 0.5%이하 |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

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가입자격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종류 C1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종류 C1수익증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종류 C1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수익자가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구분 | 1 영업일 | 2 영업일 | 3 영업일 | 4 영업일 |
|-------------------------|----------------|-------|--------------------------|--------------------------|
|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납입시 | 입금일 (매입청구일) |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
|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납입시 | 입금일 | | (매입청구일)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 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구분 | 1 영업일 | 2 영업일 | 3 영업일 | 4 영업일 | 5 영업일 | 6 영업일 | 7 영업일 |
|---------------------------|-----------|-------|-------|-------------|-------------|-------------|-------------|
|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 환매 청구일 | | | 기준가격 적용일 | | 환매대금 지급일 | |
|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환매신청시 | 환매 청구일 | | | | 기준가격 적용일 | | 환매대금 지급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신탁계약 제 50 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공시

1.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외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2 영업일 이상의 장기 휴무 등 중국본토 시장에서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 등이 불가능하거나, 공정기준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본토 주식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 까지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삭제)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 영업일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5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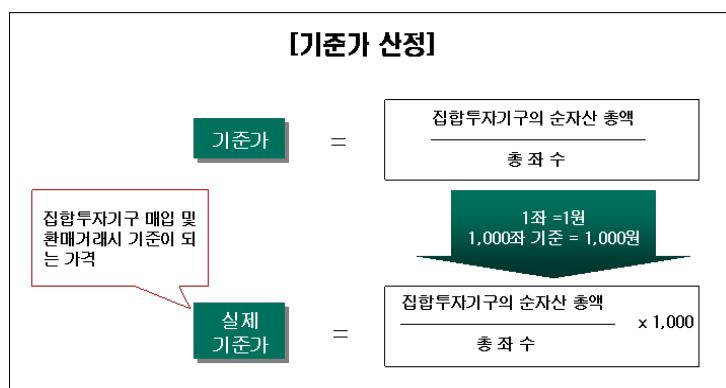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p>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 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1좌당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p> |
| 종류간 기준가격이 |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

| | |
|----------------|---|
| 상이한 이유 |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 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외화표시유가증권 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 | |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 |
| 비상장외화표시 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종류)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 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제한없음 | 납입금액의 1.0%이내 | - |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인터넷가입 투자자 | 납입금액의 0.5%이내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1) | 제한없음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2) | 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3) | C1 수익증권 2년 이상 보유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 | C1 수익증권 3년 이상 보유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인터넷가입 투자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 최초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C-F) | 집합투자기구, 제9조제24항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보유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 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 | 3년 만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 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 | - |
| 부과기준 | | | 매입시 | 환매시 |
| | | | 전환시 | |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종류)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 집합 투자 | 판매 | 수탁 | 일반사무 관리 | 총보수 | 기타 비용 ^{주1)} | 총 보수·비 용 비율 TER ²⁾ | 합성 총보 수 · 비용 비율 ³⁾ | 동종유형 총 보수 ^{주4)} | 증권거래 비율 ^{주5)}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0.90 | 0.70 | 0.05 | 0.01 | 1.66 | 0.002 | 1.662 | 1.784 | 1.73 | 0.35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0.90 | 0.35 | 0.05 | 0.01 | 1.31 | 0.002 | 1.312 | 1.434 | 1.28 | 0.3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1) | 0.90 | 1.40 | 0.05 | 0.01 | 2.36 | 0.000 | 2.360 | 2.485 | 1.89 | 0.3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2) | 0.90 | 1.10 | 0.05 | 0.01 | 2.06 | 0.000 | 2.060 | 2.178 | | 0.3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3) | 0.90 | 0.80 | 0.05 | 0.01 | 1.76 | 0.000 | 1.760 | 1.877 | | 0.3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 | 0.90 | 0.69 | 0.05 | 0.01 | 1.65 | 0.002 | 1.652 | 1.775 | | 0.35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0.90 | 0.50 | 0.05 | 0.01 | 1.46 | 0.002 | 1.462 | 1.585 | 1.47 | 0.3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 0.90 | 0.10 | 0.05 | 0.01 | 1.06 | - | 1.06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C-F) | 0.90 | 0.03 | 0.05 | 0.01 | 0.99 | 0.002 | 0.992 | 1.106 | | 0.32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0.90 | 0.00 | 0.05 | 0.01 | 0.96 | 0.00 | 0.96 | 0.96 | | 0.0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90 | 0.65 | 0.05 | 0.01 | 1.61 | 0.002 | 1.612 | 1.734 | | 0.35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0.90 | 0.30 | 0.05 | 0.01 | 1.26 | 0.00 | 1.26 | 1.381 | | 0.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0.90 | 0.195 | 0.05 | 0.01 | 1.155 | 0.00 | 1.155 | 1.277 | | 0.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 0.90 | 0.015 | 0.05 | 0.01 | 0.975 | - | 0.975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0.90 | 0.80 | 0.05 | 0.01 | 1.76 | 0.002 | 1.762 | 1.885 | | 0.35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0.90 | 0.49 | 0.05 | 0.01 | 1.45 | - | 1.45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0.90 | 0.71 | 0.05 | 0.01 | 1.67 | - | 1.67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90 | 0.325 | 0.05 | 0.01 | 1.285 | 0.002 | 1.287 | 1.408 | | 0.3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0.90 | 0.4 | 0.05 | 0.01 | 1.36 | 0.002 | 1.362 | 1.486 | | 0.35 |
| 지급시기 | 매 3개월 후급 | | | | 사유발생시 | - | - | - | 사유발생시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2.4.2~2023.4.1) 기타 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편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5)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2.4.2~2023.4.1) 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편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8)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134,243 |
| 금융비용 | - |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 투자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80 | 470 | 670 | 1,100 | 2,37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196 | 350 | 511 | 858 | 1,89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 255 | 489 | 701 | 1,133 | 2,416 |

| 체감(C1) 자동전환시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62 | 333 | 512 | 897 | 2,04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113 | 232 | 357 | 626 | 1,42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98 | 202 | 310 | 544 | 1,23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C-P) | 178 | 364 | 560 | 982 | 2,23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142 | 290 | 446 | 782 | 1,78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131 | 268 | 413 | 723 | 1,64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 193 | 396 | 609 | 1,067 | 2,4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 144 | 296 | 455 | 798 | 1,81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 152 | 312 | 480 | 841 | 1,915 |

※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종류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3.25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4)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해지 거래에

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저축 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p>[납입금액]</p> <p>-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 분리과세한도 |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 |

| | |
|-------------------|---|
| | 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항제 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200 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
| 가입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대상펀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 세제혜택적용 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국본토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은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에서 설명한 “중국 세계상 과세위험” 때문에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7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재무정보

| 항 목 | 제 7 기 | 제 6 기 | 제5기 |
|----------|----------------|----------------|----------------|
| | 2022.04.01 | 2021.04.01 | 2020.04.01 |
| 운용자산 | 42,271,096,384 | 58,018,592,821 | 48,314,835,921 |
| 유가증권 | 40,117,450,740 | 55,089,250,032 | 46,836,269,105 |
| 현금 및 예치금 | 2,153,645,644 | 1,399,342,789 | 1,478,566,816 |
| 기타 운용자산 | 0 | 1,530,000,000 | 0 |
| 기타자산 | 1,238,633,410 | 1,600,718,872 | 833,590,748 |
| 자산총계 | 43,509,729,794 | 59,619,311,693 | 49,148,426,669 |
| 기타부채 | 472,278,095 | 728,942,598 | 1,006,790,062 |
| 부채총계 | 472,278,095 | 728,942,598 | 1,006,790,062 |
| 원본 | 32,103,359,558 | 37,126,786,310 | 43,949,985,903 |
| 이익조정금 | 10,934,092,141 | 21,763,582,785 | 4,191,650,704 |
| 자본총계 | 43,037,451,699 | 58,890,369,095 | 48,141,636,607 |
| | | | |
| 운용수익 | -7,333,975,741 | 20,422,123,631 | 2,459,860,167 |
| 이자수익 | 12,571,262 | 5,286,355 | 26,914,214 |
| 배당수익 | 446,194,494 | 519,734,975 | 619,398,603 |
| 매매평가차손익 | -7,792,741,497 | 19,897,102,301 | 1,813,547,350 |
| 기타수익 | 0 | 0 | 0 |
| 운용비용 | 4,614,302 | 4,564,862 | 4,773,348 |
| 매매수수료 | 139,072 | 174,472 | 201,968 |
| 기타비용 | 4,475,230 | 4,390,390 | 4,571,380 |
| 당기순이익 | -7,338,590,043 | 20,417,558,769 | 2,455,086,819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원)

| 구분 | 당기 | | | 전기 |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주)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주)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 (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 (B/A) |
| 주식 | 134,871,495,465 | 134,875,094 | 0 | 57,864,357,869 | 57,552,744 | 0 |
| 합계 | 134,871,495,465 | 134,875,094 | 0 | 57,864,357,869 | 57,552,744 | 0 |

주) 주식 중 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12,497,144 | 65,476,458,742 | 12,496,857 | 68,692,445,066 | 32,032,996,326 | 214 | 31.99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운용펀드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43,950 | 48,142 | 10,603 | 16,181 | 18,008 | 25,966 | 37,127 | 59,411 |
| 2021/04/02~2022/04/01 | 37,127 | 58,890 | 3,498 | 5,565 | 8,850 | 14,146 | 32,103 | 43,491 |
| 2022/04/02~2023/04/01 | 32,103 | 43,037 | 2,124 | 2,646 | 6,287 | 7,748 | 28,279 | 34,137 |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2,727 | 13,516 | 934 | 1,279 | 5,441 | 7,482 | 8,221 | 12,546 |
| 2021/04/02~2022/04/01 | 8,221 | 12,546 | 390 | 591 | 1,758 | 2,681 | 6,852 | 8,781 |
| 2022/04/02~2023/04/01 | 6,852 | 8,781 | 214 | 254 | 598 | 709 | 6,467 | 7,340 |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회계기간 중 | 기간말 잔고 |
|----|--------|--------|--------|
|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397 | 1,510 | 565 | 830 | 931 | 1,293 | 1,031 | 1,607 |
| 2021/04/02~2022/04/01 | 1,031 | 1,607 | 243 | 381 | 318 | 501 | 956 | 1,255 |
| 2022/04/02~2023/04/01 | 956 | 1,255 | 70 | 86 | 107 | 129 | 920 | 1,073 |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44 | 148 | 203 | 293 | 293 | 443 | 54 | 79 |
| 2021/04/02~2022/04/01 | 54 | 79 | 47 | 70 | 79 | 115 | 22 | 27 |
| 2022/04/02~2023/04/01 | 22 | 27 | 44 | 48 | 37 | 41 | 28 | 31 |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50 | 186 | 305 | 609 | 87 | 136 | 368 | 651 |
| 2021/04/02~2022/04/01 | 368 | 651 | 68 | 120 | 381 | 667 | 55 | 81 |
| 2022/04/02~2023/04/01 | 55 | 81 | 3 | 5 | 28 | 38 | 30 | 39 |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208 | 1,447 | 89 | 131 | 1,284 | 2,018 | 13 | 22 |
| 2021/04/02~2022/04/01 | 13 | 22 | 58 | 97 | 20 | 35 | 51 | 74 |
| 2022/04/02~2023/04/01 | 51 | 74 | 29 | 38 | 54 | 72 | 26 | 34 |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 | | | | |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2020/04/02~2021/04/01 | 4,251 | 4,267 | 1,409 | 1,889 | 1,538 | 1,995 | 4,122 | 5,947 |
| 2021/04/02~2022/04/01 | 4,122 | 5,947 | 121 | 174 | 659 | 952 | 3,584 | 4,343 |
| 2022/04/02~2023/04/01 | 3,584 | 4,343 | 152 | 170 | 196 | 220 | 3,541 | 3,800 |

(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581 | 623 | 445 | 649 | 590 | 868 | 436 | 673 |
| 2021/04/02~2022/04/01 | 436 | 673 | 62 | 97 | 187 | 292 | 311 | 404 |
| 2022/04/02~2023/04/01 | 311 | 404 | 70 | 82 | 69 | 82 | 312 | 360 |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편드, 전문투자자 등(C-F)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4,228 | 4,583 | 880 | 1,364 | 167 | 290 | 4,952 | 7,766 |
| 2021/04/02~2022/04/01 | 4,952 | 7,766 | 0 | 0 | 962 | 1,512 | 3,990 | 5,290 |
| 2022/04/02~2023/04/01 | 3,990 | 5,290 | 0 | 0 | 2,711 | 3,230 | 1,279 | 1,512 |

(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1/04/02~2022/04/01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2/04/02~2023/04/01 | 0 | 0 | 0 | 0 | 0 | 0 | 0 | 0 |

(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3,183 | 14,035 | 2,205 | 3,217 | 3,744 | 5,199 | 11,644 | 17,824 |

| | | | | | | | | |
|-----------------------|--------|--------|-----|-------|-------|-------|--------|--------|
| 2021/04/02~2022/04/01 | 11,644 | 17,824 | 907 | 1,370 | 1,958 | 2,978 | 10,593 | 13,624 |
| 2022/04/02~2023/04/01 | 10,593 | 13,624 | 584 | 695 | 1,027 | 1,200 | 10,150 | 11,566 |

(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10 | 119 | 67 | 102 | 137 | 189 | 40 | 63 |
| 2021/04/02~2022/04/01 | 40 | 63 | 19 | 30 | 18 | 29 | 41 | 54 |
| 2022/04/02~2023/04/01 | 41 | 54 | 3 | 4 | 9 | 11 | 35 | 41 |

(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132 | 143 | 103 | 133 | 137 | 185 | 98 | 154 |
| 2021/04/02~2022/04/01 | 98 | 154 | 22 | 35 | 40 | 62 | 80 | 106 |
| 2022/04/02~2023/04/01 | 80 | 106 | 4 | 5 | 16 | 20 | 68 | 80 |

(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6,081 | 5,934 | 1,047 | 1,397 | 1,568 | 2,049 | 5,559 | 7,789 |
| 2021/04/02~2022/04/01 | 5,559 | 7,789 | 770 | 1,070 | 1,137 | 1,592 | 5,192 | 6,103 |
| 2022/04/02~2023/04/01 | 5,192 | 6,103 | 531 | 573 | 718 | 780 | 5,005 | 5,204 |

(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891 | 1,029 | 1,159 | 1,890 | 830 | 1,246 | 1,220 | 2,030 |
| 2021/04/02~2022/04/01 | 1,220 | 2,030 | 205 | 344 | 405 | 682 | 1,020 | 1,432 |
| 2022/04/02~2023/04/01 | 1,020 | 1,432 | 121 | 154 | 211 | 271 | 930 | 1,160 |

(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 백만)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2020/04/02~2021/04/01 | 898 | 1,028 | 1,453 | 2,380 | 1,125 | 1,711 | 1,226 | 2,025 |
| 2021/04/02~2022/04/01 | 1,226 | 2,025 | 714 | 1,186 | 692 | 1,147 | 1,249 | 1,737 |
| 2022/04/02~2023/04/01 | 1,249 | 1,737 | 414 | 531 | 235 | 298 | 1,427 | 1,763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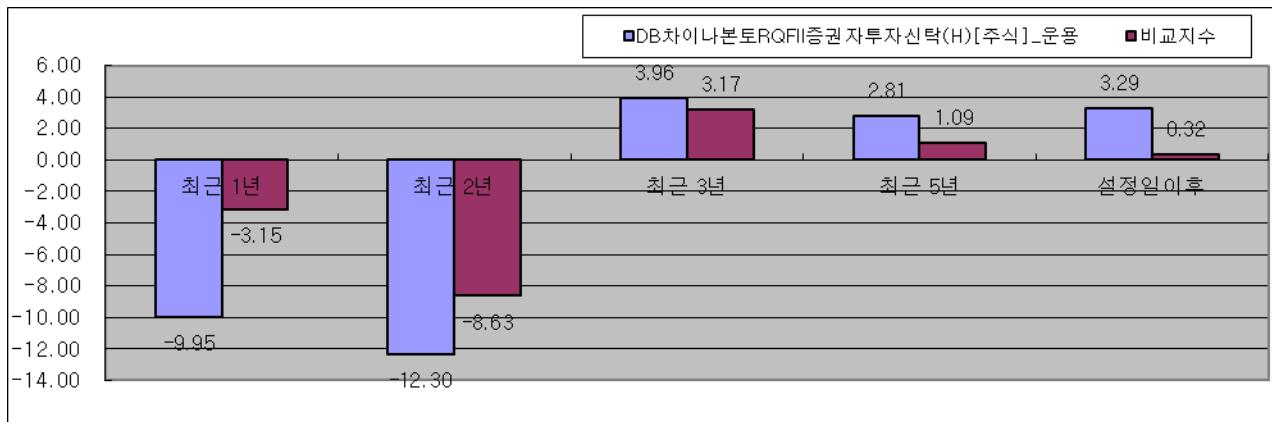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CSI300 Index * 85%) + (Call * 15%)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3년 | 최근5년 | 설정일 이후 (%) |
|----------------------|------------|-------------------------|-------------------------|-------------------------|-------------------------|------------|
| | | 2022/04/02 ~ 2023/04/01 | 2021/04/02 ~ 2023/04/01 | 2020/04/02 ~ 2023/04/01 | 2018/04/02 ~ 2023/04/01 | |
| 운용 | 2015-04-02 | -9.95 | -12.30 | 3.96 | 2.81 | 3.29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익률변동성(%) | 2015-04-02 | 13.12 | 14.57 | 18.10 | 18.50 | 20.44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5-04-02 | -11.44 | -13.77 | 2.24 | 1.12 | 1.59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5-04-02 | -11.13 | -13.46 | 2.60 | 1.47 | 1.95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2015-04-02 | -12.06 | -14.37 | 1.53 | 0.41 | 0.88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2016-04-06 | -11.80 | -14.11 | 1.84 | 0.72 | 3.86 |

| | | | | | | |
|-------------------------------------|------------|--------|--------|------|-------|-------|
| 보수체감(C2) | | | | | | |
| 비교지수 | 2016-04-06 | -3.15 | -8.63 | 3.17 | 1.09 | 3.06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 2017-04-06 | -11.53 | -13.85 | 2.14 | 1.02 | 4.30 |
| 비교지수 | 2017-04-06 | -3.15 | -8.63 | 3.17 | 1.09 | 2.50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 2018-04-06 | -11.43 | -13.76 | 2.25 | 0 | 1.43 |
| 비교지수 | 2018-04-06 | -3.15 | -8.63 | 3.17 | 0 | 1.28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2015-04-02 | -11.26 | -13.59 | 2.45 | 1.32 | 1.80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2015-04-02 | -10.84 | -13.18 | 2.93 | 1.80 | 2.28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 2016-03-18 | 0 | 0 | 0 | -6.24 | 0 |
| 비교지수 | 2016-03-18 | 0 | 0 | 0 | -3.81 | 0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C-P) | 2015-04-02 | -11.40 | -13.72 | 2.29 | 1.17 | 1.64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 2015-04-02 | -11.08 | -13.41 | 2.66 | 1.53 | 2.00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2015-04-02 | -10.99 | -13.32 | 2.76 | 1.63 | 2.11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8.63 | 3.17 | 1.09 | 0.32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C- P2) | 2015-06-29 | -11.53 | -13.85 | 2.14 | 1.02 | 0.50 |
| 비교지수 | 2015-06-29 | -3.15 | -8.63 | 3.17 | 1.09 | -0.2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 2017-08-07 | -11.11 | -13.44 | 2.63 | 1.50 | 4.34 |
| 비교지수 | 2017-08-07 | -3.15 | -8.63 | 3.17 | 1.09 | 1.7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 2017-08-08 | -11.18 | -13.50 | 2.55 | 1.42 | 4.14 |
| 비교지수 | 2017-08-08 | -3.15 | -8.63 | 3.17 | 1.09 | 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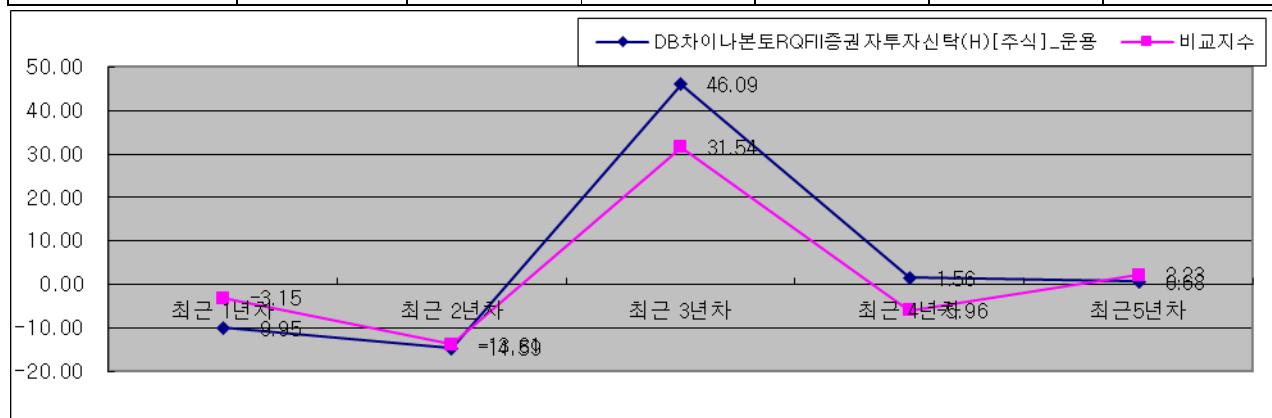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을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1년차 | 최근2년차 | 최근3년차 | 최근4년 | 최근5년차 |
|------------------------------|------------|-------------------------|-------------------------|-------------------------|-------------------------|-------------------------|
| | | 2022/04/02 ~ 2023/04/01 | 2021/04/02 ~ 2022/04/01 | 2020/04/02 ~ 2021/04/01 | 2019/04/02 ~ 2020/04/01 | 2018/04/02 ~ 2019/04/01 |
| 운용 | 2015-04-02 | -9.95 | -14.59 | 46.09 | 1.56 | 0.68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2015-04-02 | -11.44 | -16.03 | 43.71 | -0.11 | -0.97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2015-04-02 | -11.13 | -15.73 | 44.21 | 0.24 | -0.62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 2015-04-02 | -12.06 | -16.62 | 42.72 | -0.81 | -1.66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 2016-04-06 | -11.80 | -16.37 | 43.18 | -0.51 | -1.36 |
| 비교지수 | 2016-04-06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 2017-04-06 | -11.53 | -16.11 | 43.58 | -0.21 | -1.07 |
| 비교지수 | 2018-04-06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 2018-04-06 | -11.43 | -16.02 | 43.73 | -0.10 | 0.50 |
| 비교지수 | 2017-04-06 | -3.15 | -13.81 | 31.54 | -5.96 | 3.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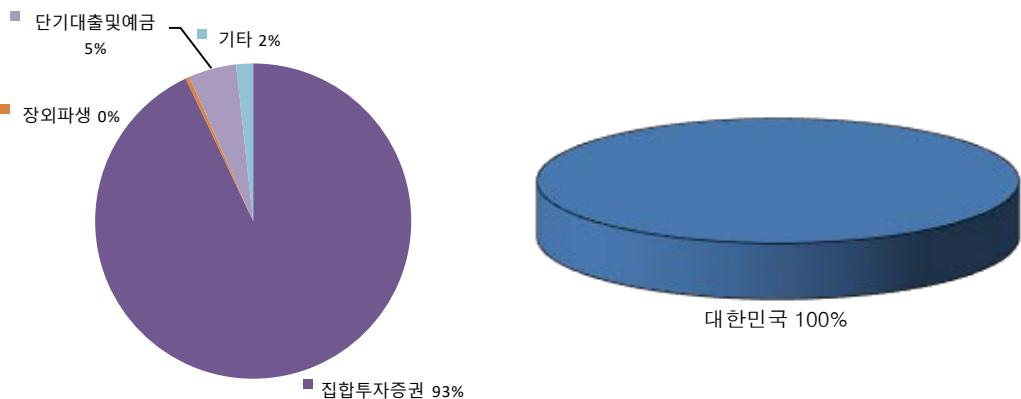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5-04-02 | -11.26 | -15.85 | 44.00 | 0.09 | -0.77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 2015-04-02 | -10.84 | -15.45 | 44.67 | 0.56 | -0.30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2016-03-18 | 0 | 0 | 0 | 0 | 0 |
| 비교지수 | 2016-03-18 | 0 | 0 | 0 | 0 | 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2015-04-02 | -11.40 | -15.98 | 43.79 | -0.06 | -0.92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5-04-02 | -11.08 | -15.68 | 44.29 | 0.29 | -0.57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5-04-02 | -10.99 | -15.59 | 44.43 | 0.40 | -0.47 |
| 비교지수 | 2015-04-02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2015-06-29 | -11.53 | -16.11 | 43.57 | -0.21 | -1.07 |
| 비교지수 | 2015-06-29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2017-08-07 | -11.11 | -15.70 | 44.25 | 0.27 | -0.60 |
| 비교지수 | 2017-08-07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2017-08-08 | -11.18 | -15.77 | 44.15 | 0.19 | -0.67 |
| 비교지수 | 2017-08-08 | -3.15 | -13.81 | 31.54 | -5.96 | 2.23 |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을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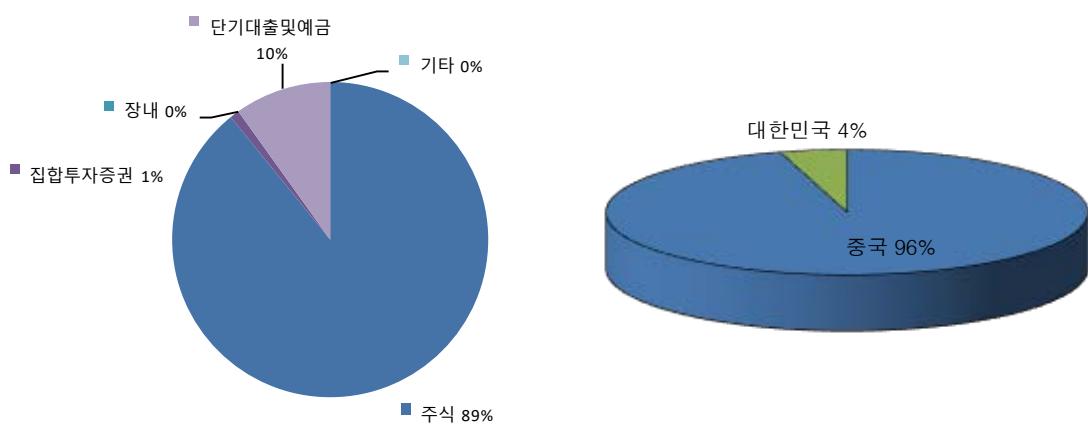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2023.4.1 기준, 단위 : 백만)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 |
| 대한민국 | 0 | 0 | 0 | 32,031 | 0 | -139 | 1,682 | 597 | 34,170 |
| | (0) | (0) | (0) | (93.74) | (0) | -(0.41) | (4.92) | (1.75) | (100.00) |
| 자산합계 | 0 | 0 | 0 | 32,031 | 0 | -139 | 1,682 | 597 | 34,170 |
| | (0) | (0) | (0) | (93.74) | (0) | -(0.41) | (4.92) | (1.75)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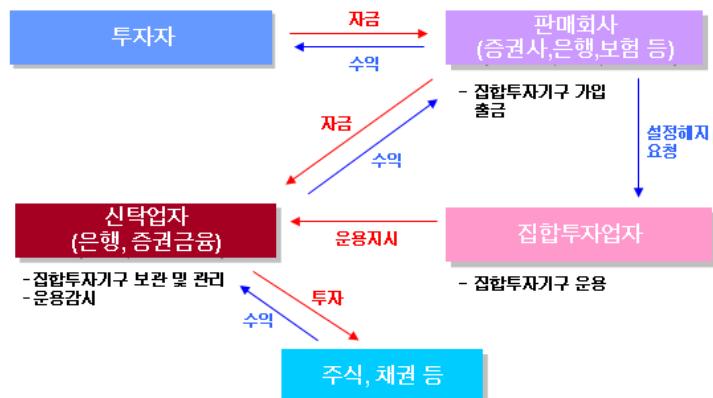
* DB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구성현황(2023.4.1 기준, 단위 : 백만,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 |
| 중국 | 31,062 | 0 | 0 | 0 | 2 | 0 | 2,213 | 0 | 33,276 |
| | (93.34) | (0) | (0) | (0.00) | (0.01) | (0) | (6.65) | (0.00) | (95.52) |
| 대한민국 | 0 | 0 | 0 | 335 | 0 | 0 | 1,225 | 0 | 1,560 |
| | (0.00) | (0) | (0) | (21.46) | (0.00) | (0) | (78.53) | (0.01) | (4.48) |
| 자산합계 | 31,062 | 0 | 0 | 335 | 2 | 0 | 3,438 | 0 | 34,837 |
| | (89.16) | (0) | (0) | (0.96) | (0.01) | (0) | (9.87) | (0.00) | (100.00)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
|---------|-------------------------------|--|
| DB 자산운용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02-787-3700) | www.db-asset.co.kr |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목 | 27기 | 26기 |
|-----------------------|----------------|----------------|
| | (2022.12.31) | (2021.12.31) |
|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4,521,832,537 | 1,139,172,852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32,455,154 | 3,587,089,852 |
| III. 관계기업투자자산 | 4,187,960,000 | 3,265,755,011 |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7,200,000 | 417,200,000 |
| 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0,313,949,271 | 57,338,598,524 |
| VI. 유형자산 | 41,519,683 | 7,829,059 |
| VII. 기타자산 외 | 1,877,210,169 | 3,042,584,316 |
| 자산총계 | 65,892,126,814 | 68,798,229,614 |
| I. 기타부채 | 2,787,829,980 | 5,460,637,812 |
| 부채총계 | 2,787,829,980 | 5,460,637,812 |
| I. 자본금 | 30,000,000,000 | 30,000,000,000 |
|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1,602,507 | -231,602,507 |
| III. 이익잉여금 | 33,335,899,341 | 33,569,194,309 |
| 자본총계 | 63,104,296,834 | 63,337,591,802 |
| 부채와자본총계 | 65,892,126,814 | 68,798,229,614 |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목 | 27기 | 26기 |
|-----------------|----------------|----------------|
| | (2022.12.31) | (2021.12.31) |
| I. 영업수익 | 19,029,156,556 | 25,545,725,647 |
| II. 영업비용 | 17,162,104,550 | 18,241,112,598 |
| III. 영업이익 | 1,867,052,006 | 7,304,613,049 |
| IV. 영업외수익 | 1,437,463 | 1,183,284,974 |
| V. 영업외비용 | 476,843,310 | 136,438,626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91,646,159 | 8,351,459,397 |
| VII. 법인세비용 | 424,941,127 | 1,973,907,608 |
| VIII. 당기순이익 | 966,705,032 | 6,377,551,789 |

라. 운용자산규모(2023.4.7 기준 / 억)

| 구분 | 주식 | 혼합 | 채권 | MMF | 파생 | 재간접 | 특별자산 | 부동산 | 혼합자산 | 합계 |
|-----|-------|-------|--------|--------|-------|-----|--------|-------|--------|--------|
| 수탁고 | 5,460 | 1,571 | 19,677 | 31,056 | 8,720 | 163 | 17,010 | 2,039 | 11,319 | 97,014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DB 차이나본토 RQFII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의 위탁업무

(1) 회사의 개요

| 신탁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
|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 | 16-17F, Phase II, Shangh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IFC), 8, Century Avenue, Pudong District Shanghai, China +86 21-2036-1818 |

(2) 주요업무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신탁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
|-------|---------------------------------|--|
| 하나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02-729-0114) | www.keb.co.kr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사무관리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
| 하나펀드서비스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11 층(02-6714-4600) |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KAP) | KIS 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 2로 61 2층, 3층 |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 229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 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 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 89 조제 2 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제 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 191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개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 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
|-------------------------|---|
|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p>① 회사는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p>②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p>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3. 예비투자설명서
4. 간이투자설명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